

인제대학교
연구보고서

국내동향 해외동향



법원, 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의원에 대해 집단 모욕죄 첫 인정

지난 5월 25일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이 아닌 특정 직업군을 지칭했더라도 집단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다.

강 의원은 2010년 7월 16일 국회의장배 토론회를 마친 뒤 대학생들과 저녁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 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한국아나운서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이 같은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입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고 명예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며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중앙일보에 보

도된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다 피고인이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하다”며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사회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듣고 아나운서를 (이상하게)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즉, 강 의원이 여자 대학생들 앞에서 한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쳐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경위를 해명하거나 발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지만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다’ 며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강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강 의원은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일이 없고,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다소 자극적인 제목 아래 발언의 경위를 생략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작년 9월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제명을 당했으며, 올해 5월 30일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한 바 있다.

전자소송, 특허사건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확대

종이없는 민사소송, 즉 전자소송이 5월 2일 ‘민사사건’ 으로 확대돼 시·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됨으로써 작년 4월 특허 사건에 전자소송이 처음 도입된 이후, 1년여 만에 ‘민사사건’ 으로 확대된 것이다.

전자소송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적으로 송달하는 등 서면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언제 어디서나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선고 후 판결문이나 결정서 등을 열람·출력 가능함에 따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인지나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법원마다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 350개 민사법정 가운데 80여 곳에 원활한 전자소송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등을 갖춘 전자법정을 구축했으며, 연내 85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소송은 내년 5월 가사·행정·도산사건, 2013년 5월 신청·집행·비송사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조) 언론중재위원회 전자심리제도 본격적 시행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전자심리제도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자심리제도의 시행으로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나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 담당 중재부도 종이서류 없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작년 말 전자심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월부터 4개월간의 시스템 안정화작업을 통해 본격적인 전자심리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조정·중재를 신청하려면 우선 언론중재위원회 민원 포털인 Eye-Net (<http://people.pac.or.kr>)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인터넷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석요구서나 기타 제출자료 등 심리진행과정에서 송달받아야 하는 모든 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심리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민원인이 언론피해 구제 신청을 위해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고, 각종 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중재위, 대형 사건보도의 언론보도 관행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1년도 제3차 회의(3월 21일 개최)에서 지난 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대형 사건·사고나 국가적 재난시 언론의 보도 관행이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언론사에 공통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대형 사건·사고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때의 언론 보도 관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슬픔에 빠진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클로즈업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상세히 공개하는 보도는 그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보도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대형 사건·사고나 국가적 재난시 언론은 희생자와 유족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 줌으로써 언론의 품위를 염두에 두는 보도 태도를 가져





야 하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재난 수습과 향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언론계가 주축이 되어 학계, 법 조계 등과 함께 공청회·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언론중재위, 5대 포털사와 업무협약 체결

언론중재위원회는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등 5대 포털사와 6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정사건의 중재 전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된 내용은 포털을 상대로 제기된 조정 사건을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는 중재사건으로 전환하는 데 중재위원회와 각 포털사가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2009년 8월 7일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포털이 조정·중재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그간 포털사들은 조

정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매번 심리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포털사와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포털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안과 포털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실무상 개선안 모색 등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심리에 꼭 출석해야 하는 조정절차와 달리 중재절차는 서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포털사들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분쟁은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포털사들의 번거로움이 감소되는 만큼 사건 처리가 한층 신속하고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5개 포털사와의 협약 진행경과에 따라 앞으로 포털사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과의 중재전환 업무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동향]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日 최고재판소, 통신사 제공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의 명예훼손 책임 부정

2011년 5월 10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日 최고재판소는 통신사와 신문사가 기사의 취재, 작성, 배신(配信), 게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도주체로서의 일체성이 있을 때, 통신사의 배신기사에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교토통신은 지난 2002년 7월 「최악의 사태, 왜?」라는 제목으로 도쿄여자의대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여자 어린이가 담당의사의 실수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하였는데, 아키타가이(秋田魁), 조오모(上毛), 시즈오카(静岡)의 3개 신문사는 교토통신의 배신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담당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日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4월 28일 3개 신문사의 책임을

부정한 도쿄고법의 2심 판결을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 3개 신문사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이에 앞서, 교토통신에 관한 상고는 지난 4월 21일자로 불수리 결정이 내려져 제소된 3개 신문사를 포함하여 4개 언론사 모두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한편, 1심 도쿄지법은 2007년 9월 교토통신의 배신 기사에 대해 진실·상당성을 인정했으나 3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배신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합계 385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그러나 2심 도쿄고법은 2009년 7월 교토통신과 가맹사의 상호관계에 대해 「가맹사는 교토통신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사원총회 등의 내부조직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한편으로 기사 제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토통신이 기사를 배신한 경우, 신문사가 내용에 상응한 취재원이 있다고 이해하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판단, 3개 신문사의 기사 게재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재판부는, 통신사와 신문사의 관계에 대해 「신문사의 보도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으며, 현대에 있어서 보도시스템의 하나의 형태로 널리 사회에 인지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 배신된 기사의 내용에 대해 입증 취재를 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히토츠바시(一橋)대학 호리베 마사오(堀部政男) 명예교수는 「교토통신과 가맹사의 관계성이 강조된 판결이다. 외국의 통신사처럼 이러한 일체성의 관계가 없는 경우에 이번과 같은 판결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나, 성인이 되어 사형이 확정된 범인의 익명 여부 둘러싸고 日 언론계 판단 양분

2011년 3월 15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최근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나 성인이 되어 사형이 확정된 경우의 익명보도 여부에 대해 日 언론계의 판단이 양분되었다.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3월 10일 1994년 아이치(愛知, 키후(岐阜), 오사카(大阪) 등 3개 부·현(府·縣)에서 4명의 남성이 살해된 연속린치살인사건 2심 공판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범행 당시 18~19세였던 소년 3명의 상고를 기각, 사형을 확정했다.

일본의 각 언론사들은 이들 3명에 대해 계속 익명보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명보도로 바꿀 것인지를 놓고 판단이 양분되고 있는 가운데 3월 11일자 조간(朝刊)의 재경지(在京紙) 중 아사히(朝日)신문, 요미우리(讀賣)신문, 닛케이(日經)신문, 산케이(産經)신문은 실명으로, 마이니치(毎日)신문, 도쿄(東京)신문은 익명으로 보도했다. TV에서는 NHK, TBS, 니혼TV, 후지TV, TV도쿄가 실명으로 보도했는데 후지TV는 소년의 얼굴 사진까지도 공개했으며, TV아사히 1개사만이 익명으로 보도했다. 사형이 확정되어 갱생의 가능성이 없는데다 양형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명보도를 택한 언론사가 많았다.

일본의 소년법 제61조는, 소년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미숙한 소년 시기의 사건으로 갱생(更生), 사회복귀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사나 사진을 신문이나 출판물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각 언론사는 소년법의 취지에 맞춰, 그간 소년사건 보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의자나 피고를 익명으로 취급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사형의 대상자는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사는 2004년 사건 당시엔 소년이었던더라도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보도를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고 밝혔으며, 요미우리신문은 「사형이 확정되면 갱생(사회복귀)의 기회가 사라지는

한편,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뺏은 사형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중대한 사회적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닛케이신문은 「범행시 소년이었던 피고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진 중대성과 함께 피고의 갱생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며, 산케이신문은 「사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극히 높고 사회복귀 등을 전제로 한 갱생의 기회도 잃어버렸으며 사건의 중대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토통신은 「상고심 판결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양형이 번복된 케이스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익명보도를 계속한 마이니치신문은 「사형이 확정된 후에도 재심이나 은사(恩赦)가 인정되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으며, 도쿄신문은 「현 단계에서 갱생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명의 피고와의 면회나 주고받은 서한을 보면 내심의 변화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협회가 1958년에 제정한 「소년법 제61조의 취급방침」은 익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① 도주 중이거나 방화, 살인 등 흉악한 누범(累犯)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② 지명수배중인 범인수사에 협력하는 경우 등, 소년을 보호하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의 옹호가 강하게 우선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과 사진의 게재를 인정하기로 했다.





日 도쿄지법, 수사정보를 유출한 서적에 대해 출판, 판매금지 가처분

신문협회보 2011년 3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인터넷 상에 유출된 국제테러 수사에 관한 일본 경시청의 내부 자료를 게재한 서적에 대해 도쿄지법은 2월 16일자로 개 인정보 등을 삭제하지 않는 한 출판, 판매를 금지한다는 2010년 11월 29일자 도쿄지법의 가처분결정을 지지, 발행원인 제3서관의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제3서관은 도쿄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문제가 된 서적은 2010년 10월에 인터넷상에 유출된 경시청公安부의 테러수사자료를 하나로 모은 ‘유출『공안테러정보』 전 데이터’ 인데, 실명이나 얼굴 사진 등이 게재된 이슬람교도들의 신청을 받은 도쿄지법이 가처분을 결정한 것이며, 제3서관은 2010년 12월 28일자로 이의를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적 입장에 있지 않는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정보는 이미 인터넷상에 유출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하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제3서관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익명성이 높은 인터넷상의 정보에 비해 서적의 신용성은 높다」고 지적,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동향]

뉴햄프셔와 뉴저지 언론, 삭제된 범죄기록 공개에 대해 면죄부 받다

The News Media & The Law 2011년 봄호(P29)에 의하면, 뉴저지와 뉴햄프셔의 언론인들은 삭제된 범죄사실의 공표 여부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올해 있었던 주 법원의 판결로 이러한 경우 언론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뉴저지 대법원은 올해 1월 이미 삭제된 범죄 기록을 보도하는 것이 반드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2007년 G.D. 대 Kenny 사건은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브라이언 스택(Brian Stack) 후보의 경쟁후보가 전단을 배포했던 사건이다. Kenny는 선거 전단에서 스택 후보의 참모인 G.D.에게 범죄 전력이 있다며 비난했는데, G.D.는 전단이 공표되었을 당시 범죄기록이 삭제된 상태였다.

이후 G.D.는 명예훼손적인 거짓 전단을 배포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전단에 적힌 내용이 진실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리 알빈(Barry T. Albin) 판사는 “비록 법에 따라 이전에 있었던 일부 경범죄에 대한 범죄기록을 삭제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참고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한 뉴저지 미디어 그룹의 브루스 로센(Bruce Rosen) 변호사는 “이미 일어났던 일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진실이 진실로서 인정받았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또한 뉴저지 법원의 판결이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론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이번 판결로서 명확해졌다. 이제 누구

도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저지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 한달 후, 뉴햄프셔 대법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Lovejoy 대 Linehan 사건에서 후보자의 이전 범죄기록을 공표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한 이전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데이비드 러브조이(David Lovejoy)는 1989년 경범죄로 처벌받았으나 이후 그 기록은 삭제되었다. 2009년 러브조이는 당시 보안관으로 재직 중이던 댄 린네한(Dan Linehan)을 상대로 록킹햄 카운티(Rockingham County) 보안관 선거에 출마했다. 린네한과 부보안관 마크 퍼스(Mark Peirce)는 포츠머스 헤럴드 기자에게 1989년에 있었던 러브조이의 범죄사실을 넘겼고, 이는 기사로 공표되었다.

이후 린네한 보안관과 퍼스 부보안관은 이미 경범죄로 체포되거나 전과가 있었다라도 그 기록이 삭제된 경우에는 공표를 금하고 있는 주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그러나 러브조이는 “개인 신상을 폭로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아들과 기자, 그리고 County를 고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2002년 바트닉키 대 보퍼(Bartnicki V. Vopper) 사건을 통해 언론사가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연방대법원의 판





결을 존중한 것이다.

뉴햄프셔 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고, 삭제된 범죄기록을 공표한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그러한 범죄경력이 있다는 것은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보안관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질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판시했다.

러브조이 대 린네한 사건에서 언론 측을 대리한 윌리엄 채프맨(William Chapman) 변호사는 법원에서 삭제된 범죄기록이라고 해서 반드시 뉴스 데이터베이스와 대중의 기억에서 지워버릴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프맨 변호사는 뉴햄프셔와 뉴저지에서 있었던 판결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한층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언론의 환경이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송이 없어지리라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번 사건과 자신의 사건을 전혀 별개로 생각하고 선을 긋게 마련이다. 게다가 원고 측 변호사가 아주 독특한 사고를 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소송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고 측이 원고의 삭제된 범죄기록을 기사화하는 것이 미래의 고용 관

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쟁점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측, “명예 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소송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햄프셔에서는 언론에 이러한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5월 초에 하원 의회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채프맨 변호사는 이 법안에 대해 “뉴햄프셔의 언론사에게 삭제된 범죄기록에 관한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 법안 중 범죄기록의 삭제에 관한 부분은 총 세 장으로, 이 중 두 장이 언론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기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삭제된 범죄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그 범죄의 내용을 보도한 경우

(b) 해당 범죄기록이 삭제되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은 채 해당 범죄의 내용을 보도한 경우

■ 기자 또는 언론사는 보도 이후에 범죄기록이 삭제된 경우 범죄기록이 있다는 사실, 또는 그 범죄기록의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지 않은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이 법에 따르면 기자가 해당 범죄기록의 삭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책임이 없다. 그러나 삭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도하여야만 한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며,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삭제된 범죄기록의 공표에 대한 논란에 있어 언론사에 보호막을 쳐 줄 최초의 법이 되는 셈이다.



[영국동향]

라이언 깁스 사건으로 야기된 인터넷을 통한 유명인의 생활 침해 논란, G8 안건으로 인터넷 규제 상정

헤럴드 스코틀랜드(Herald Scotland) 6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유명 축구선수인 라이언 깁스(Ryan Giggs)의 사생활 보도금지 명령(super-injunction row)과 관련, 유명인에 대한 인터넷상 규제를 강화할지 여부에 대해 세계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의 한 언론사가 자신이 톱모델 이모겐 토마스와 불륜에 얽혀있다는 소문을 보도할 예정이란 것을 안 깁스는,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불륜과 관련된 사실은 물론, 그가 보도금지 명령을 받아냈다는 사실 자체도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익명의 트위터 이용자가 깁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페이스북 등 다른 SNS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졌다. 법원의 보도금지 명령이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심지어 헤럴드 스코틀랜드의 일요판인 '선데이 헤럴드'가 1면에 그의 사진을 게재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법원의 보도금지 명령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무의미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결국 이번 주에 프랑스 북부 도빌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부총리이자 자유민주당 대표인 닉 클레그(Nick Clegg)는 아무도 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동료 의원이 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깁스의 실명을 밝힌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제프리 로버트슨(Geoffrey Robertson) 왕실 고문변호사 또한 실명을 밝힌 존 헤밍(John Hemming) 의원이 법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회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헤밍 의원은 자신이 해당 선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나는 그 보도금지령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 금지명령을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며, 그런데 실제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선데이 헤럴드 뿐만 아니라 위키디피아, 트위터에서도 그 선수의 이름을 봤다. 의사당에서 했던 말을 연단에서 다시 하려면 또 하겠다. 이것은 공적인 관심사이다. 의회의 면책특권을 이용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다."

한편 트위터사는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깁스의 신원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명령을 보란 듯이 위반하도록 내버려둬 법을 노리개로 삼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몇몇 인터넷사는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나,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트위터사에서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총리조차도 "계속되기 어렵다"고 지적인 보도금지령에 대한 법률을 재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법률이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간 갈등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총리의 대변인은 인터넷에 법원의 보도금지 명령을 어긴 책임을 물어야할지 여부에 대한 이번 사건이 정상회의에서 논의될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유동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확정적인 결정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또한 해당 법률에 대해 G8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기술적 부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통신원 보고]

최지선 통신원, 파리2대학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더 타임즈(The Times) 기자, 법원이 보도 금지 명령한 사안을 트위터에 게재해 논란

더 타임즈(The Times)의 한 기자는 법원이 보도금지 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해 트위터에 누설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될 상황에 처했다. 이번 사건은 소셜 네트워킹에서 법원의 명령을 어긴 최초의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자는 법원의 심리 중에 있는 영국의 프로 축구 선수가 관련된 혼외 정사 사건에 대해 고등 법원이 선수의 이름을 알 수 없도록 보도 금지령을 내린지 수 시간 후에 해당 선수의 이름을 트위터에 밝히고 그에 관한 농담을 함께 올렸다.

기자가 이 내용을 올린 지 하루 만에 13,000여 명의 팔로워들이 트위터를 통해 이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선수의 실명과 함께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확대되었다. 영국 고등법원의 보도 금지 명령이 미치지 않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일간지마저 해당 선수의 실명과 사진을 1면에 싣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법원의 보도 금지 명령이 트위터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게 된 것이다.

기자가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올린 것이 법원의 보도 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결정이 나면 법정 모독죄로 벌금 혹은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민감한 측면이 많아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를 두고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 여러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첫째, 이번 케이스는 법원이 보도 금지 명령을 내린 사안을 개인 트위터를 통해 누설한 것으로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법원의 명령이 소셜 네트워킹에까지 적용이 되느냐는 점이다. 둘째, 해당 사안을 트

위위에 올린 사람이 기자라는 점 역시 법정에서 침해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기자이면서 트위터 사용자라는 이중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선수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트위터사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유사한 경우,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트위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문제가 발생한 다른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논란이 된 기자의 트윗은 이미 삭제되었으나, 해당 선수의 법무팀과 변호사는 판사에게 이번 사례를 법무 장관에게 이관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당 기자가 소속된 더 타임즈의 편집부는 “타임즈에서는 트위터에 올린 기자가 누구지 알고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는 트위터 유저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논란이 있는 발언을 트위터에 올린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은 없을 것이다”고 다시 한 번 트위터에 올렸다. 또,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다면 트위터 팔로워들이 자신에게 와인이나 케이크를 선물로 보내줄 것을 제안하는 농담을 올렸다.

법원이 보도 금지한 사건을 트위터에 올린 것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통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타임즈 기자인 것이 이례적으로 밝혀졌지만, 일반적으로 익명의 사용자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몇몇 전문가들은 기자가 법원에 의해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테일러 웨싱(Taylor Wessing) 로펌의 미디어 법무팀장인 니리 산(Niri Shan)은 “이 정도의 위법 행위로 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법원이 추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햄 유니버시티(Durham University) 법학부의 가빈 필립슨(Gavin Phillipson) 교수 역시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어떤 내용을 올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다”며 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사례로 삼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佛 CSA, 언론사에 형사소송 중인 피고인에 대한 보도 신중할 것 권고

프랑스 시청각고등위원회(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 CSA)는 언론 자유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법¹⁾의 '무죄추정원칙에 기반한 보도원칙'을 근거로 언론사에 유력 대선 후보이자 전 IMF 총재인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Dominique Strauss Kahn)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신중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 법에 따르면, 프랑스는 형사재판 중에 있으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수갑을 차거나 결박되어 있는 모

1) 언론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2000년에 개정된 것임.





습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법원은 해당 언론사에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특히, 위 규정은 언론사가 비록 피고인의 무혐의나 결백과 관련한 설명, 코멘트를 주로 게재한다고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설명이나 코멘트의 내용과 상관없이 보도된 사진이나 이미지 자체로 피고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사진이나 이미지의 보도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피고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 보도의 자유에 관한 법률도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 CSA의 입장이다. 즉, 표현의 자유나 언론 보도의 자유에 앞서 아직 범죄 사실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특정 언론사에 자신의 이미지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언론사에서 같은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하는 것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CSA는 스트로스크칸의 수갑을 차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는 프랑스 방송사가 미국 방송사 화면 또는 프랑스 타 방송사 화면을 재송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방송사가 단순히 피고인의 혐의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 조항과 CSA의 입장에 근거해 스트로스 칸의 변호사 중 한명인 도미니크 드 러스(Dominique de Leusse) 역시, 수갑을 찬 스트로스 칸의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언론법 전문 변호사인 히사 말카(Richard Malka)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모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러한 CSA의 결정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스트로스 칸의 사건과 비슷하게 2004년 6월 11일 3개 언론사(Paris Match, VSD, FranceSoir)가 유명 가수 베르트랑 캉타(Bertrand Cantat)가 수갑을 찬 채, 2003년 8월 예심판사의 심리를 받고 나오는 사진을 게재하여 파리 형사합의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2004년 3월, 캉타가 동거녀 마리 트랑티냥(Marie Trintignant)을 실제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언론사들이 피고의 수갑 찬 사진을 게재한 시점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03년이었기 때문에 언론 자유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법의 제 35조를 적용, 언론사들이 벌금형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파리 법원, 저작권법 침해로 구글(Google)에 벌금형

파리 법원은 구글 프랑스(Google France)와 구글 본사(Google Inc.)에 대해 저작권법 침해로 43만 유로(원화 약 7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영화 Mondovina의 제작자, 사진 작가, 아르테(Arte)와의 공동제작으로 만들어진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에 관한 다큐멘터리의 제작자들, 까날 플뤼스(Canal +)와의 공동제작으로 만들어진 드니 호베르(Denis Robert) 기자의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의 제작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측은 자신들의 다큐멘터리와 사진이 구글을 통해 노출이 되었고, 구글 측에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글 검색 페이지를 통해 영상물 시청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파리 법원은 구글에 4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원고측에 피해배상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글이 영상물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감시를 지속하여 다시 영상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원 입장에 대해, 구글은 서버 기술자에게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를 금지한 2004년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위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더구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사용자에 의해 사이트에 올려진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사의 의무 사항에 대해, 상고심은 최근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 노출과 관련하여 유튜브(Youtube), 데일리모션(Dailymotion)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사에 책임이 없음을 판결한 바 있어, 파리 법원의 이번 판결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佛 CSA, 방송에서 프로그램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 페이지 고지를 간접광고로 간주해 이를 금지

프랑스 시청각고등위원회(CSA)는 방송에서 프로그램 말미에 해당 프로그램의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고지하는 것을 간접광고로 간주, 이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5월 20일, CSA는 방송에서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정보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트위터 및 페이스북으로의 안내는 1992년 3월 27일 시행령의 9조에 따라 간접광고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CSA의 입장이다. 1992년 3월 27일 시행령의 9조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회사의 서비스, 상품, 이름 등을 언급하거나 로고 등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을 간접광고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을 해당 프로그램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이끌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명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안내해야 한다.

한편, 방송사들과 몇몇 전문가들은 이것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한 간접광고라기보다는 방송 프로그램의 활성화화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